Smiling Dalseo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11.

대구광역시 달서구
http://www.dalseo.daegu.kr

[주차관리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 : 주차관리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**

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 관리와 주차장 신축, 주·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.

□ **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○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에서 2028. 12. 31.로 연장(안 제7조의2 개정)

□ **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,**

○ 본 조례안을 2023. 9. 11.부터 10. 1.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3. 11. 1.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**

○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○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과 주차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,

○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**감사합니다.**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15 9

제출년월일: 2023. 11. 3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주차관리과장)

1. 제안이유

○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 관리와 주차장 신축, 주·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의2 개정)

-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문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【붙임 1, 2】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【붙임 3】 참조

1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23. 9. 11.~10. 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
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【붙임 1】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7조의2(존속기한) ----------2028년 12월 31일----------.

【붙임 3】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주차장법

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**5년 이내의 범위**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